



M&A 제도개선을 위한  
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 
개정안 입법예고

2024.03.0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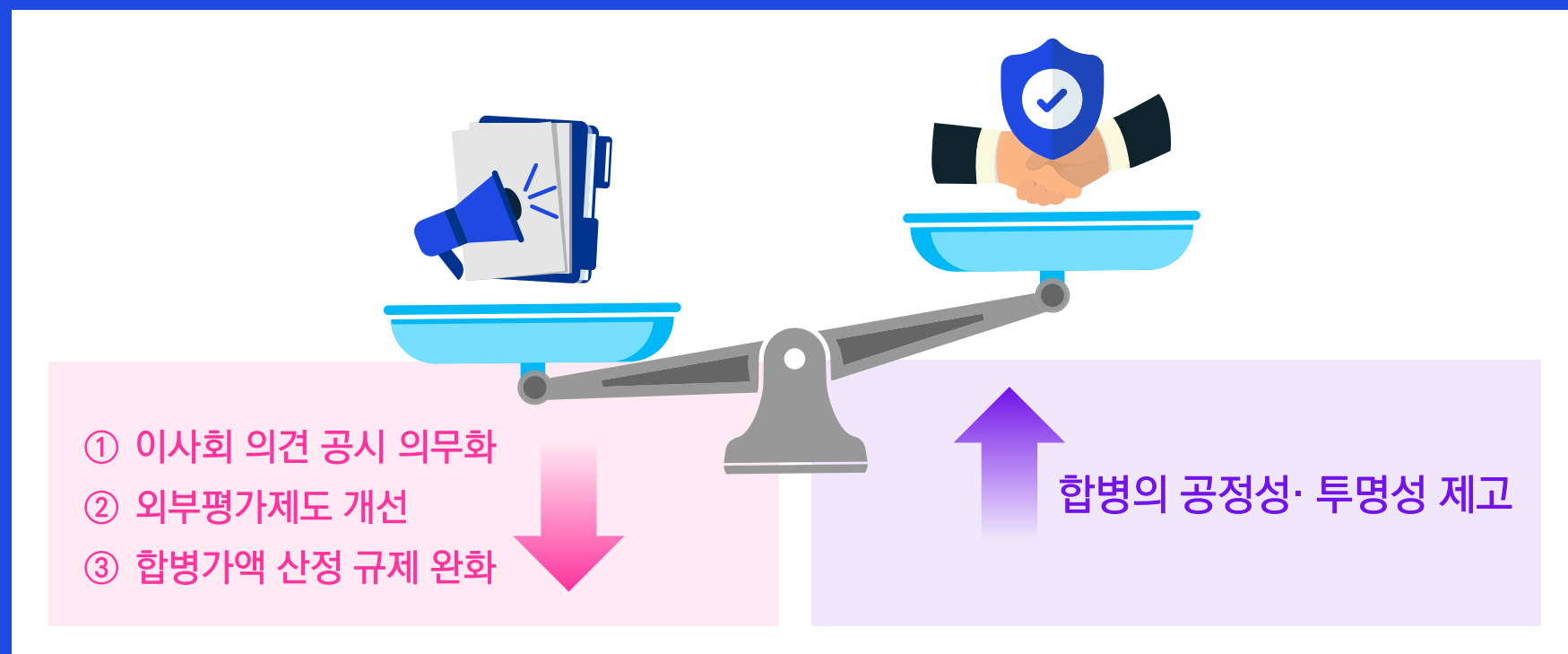
# M&A 제도개선 목적

## 01. 글로벌 정합성 제고

→ 주요국의 M&A 제도를 참고하여 제도개선 방안 도출

## 02. 일반주주의 권익보호

→ M&A의 목적, 기대효과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시



### 향후 계획

4월15일(월)까지 입법 예고

→ 3분기 중 최종 확정하여 시행예정

# I. 이사회 의견 공시 의무화

## 01 ▶ 합병에 관한 이사회 논의 내용 공시

- ✓ 증권신고서·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서류에 추가하여 공시

### 포함내용

-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
- 합병가액과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
-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, 그 사유 등



이사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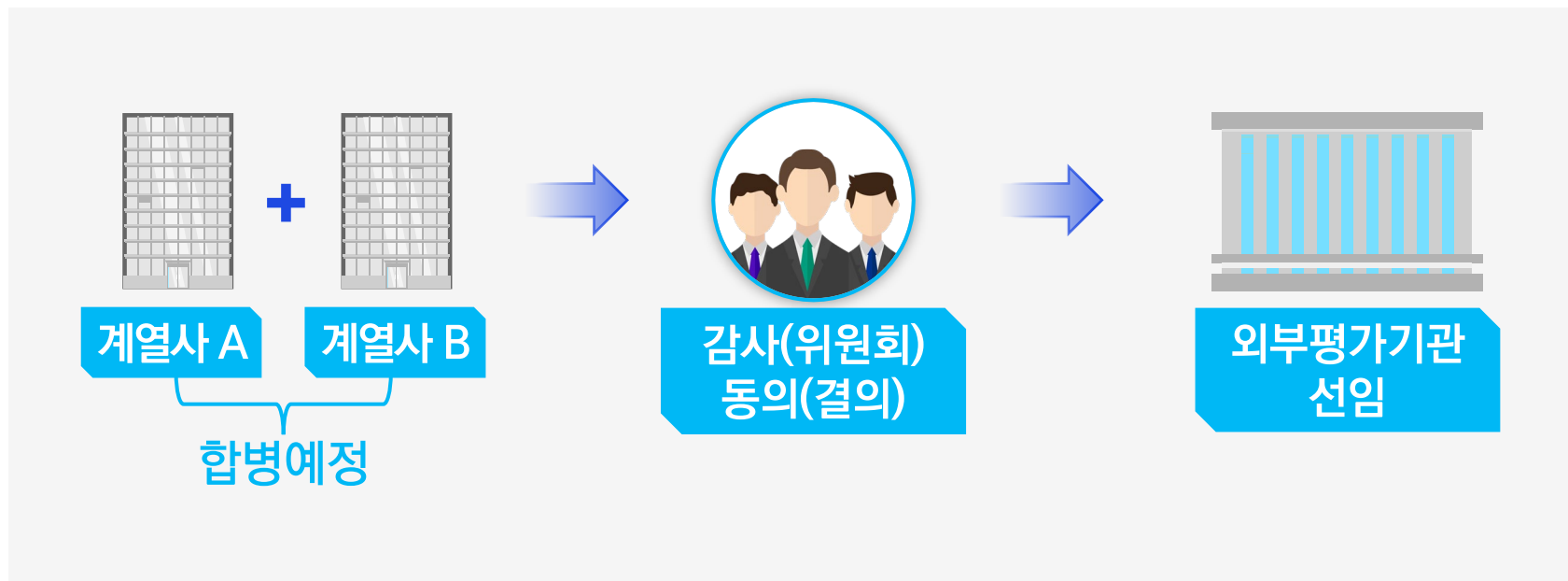


공시 의무화

## II. 외부평가제도 개선과 감사(위원회)의 역할

### 01 ▶ 계열사간 합병 시 감사(위원회)가 외부평가기관 선정

- ☑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



### 02 ▶ 외부평가기관의 행위규율 마련 의무화

- ☑ 합병가액의 산정과 평가업무의 동시 수행을 금지
- ☑ 외부평가기관 품질관리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

## III. 합병가액 산정 규제 완화

### 01 비계열사간 합병은 합병가액 산정방법 자율화

- ✓ 비계열사간 합병 시 합병가액 상하한을 규정한 종전 규정을 폐지  
✓ 단, 제3자 외부평가를 의무화

